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상 인감증명요령

강택신 과장(조사1팀 법제조사파트)
ynotme@klca.or.kr / 2087-7153

【질 의】

금번 주주총회에서 외국인인 임원이 선임된 바, 해당 임원의 등기시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날인요령은?

【응 답】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중임)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 이내, 지점 소재지에는 3주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상업등기법 제81조). 이러한 임원의 선임등기는 본점 등에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이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회사가 제출할 등기신청서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취임승낙서’)도 포함해야 하는데(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이러한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2항).

귀사와 같이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① 당해 외국인의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② 선임된 외국인 임원의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만으로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 또는 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취임승낙서에 임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아울러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한편, 당해 외국인 임원이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함으로써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예컨대 기업투자, 무역경영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2005. 2. 18.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정기보고서상 우발채무 등 기재방법

김 정 택(조사1팀 법제조사파트)
summit@klca.or.kr / 2087-7154

【질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당사는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인 A사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지급보증의 경우 당사의 변제의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총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당사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동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동 지급보증 금액을 사업보고서상 우발채무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응 답】

정기보고서상 'X.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우발채무 등'에는 ① 중요한 소송사건, ②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③ 채무보증 현황, ④ 채무인수약정 현황, 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⑥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 증권 발행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①~⑤의 경우 연결실체 기준으로 작성하되, 주요종속회사*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요종속회사란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또는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또는 기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를 의미함.

또한, ②~⑤에 해당될 경우 연결실체 내 회사간 거래내역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이 개정(2014.1.2 시행)된 바 있습니다(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2조 ~ 제11-2-5조).

귀사의 경우 종속회사 A에 대한 지급보증이 총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정한 우발부채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결실체 내 지급보증 등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③채무보증 현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참고).

즉, 귀사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동 지급보증 금액을 포함하여 채무보증 계약(약정)의 총 건수 및 각 계약(약정)별 잔액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사업연도 중 채무보증의 증감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보증 중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약정)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사와의 관계),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채무보증 조건 등 세부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식 시간외대량매매시 증여세 과세여부

이 예 지 대리(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yilee@klca.or.kr / 2087-7195

【질 의】

A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전부를 동생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여 시간외대량매매로 양도하였습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일의 한국거래소 증가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시가보다 고가입니다. 이 때, 양도인 A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응 답】

상증법은 주식을 포함한 재산(이하,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이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각각 양수인 또는 양도인에게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는 주식 등의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음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증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 등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수하여야 하며 시가와 대가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요건은 특수관계가 성립 때와 비교하여 시가와 대가의 일정금액 이상요건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상증법 제3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6항).

그러나, 거래되는 주식 등이 ① ~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 :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를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전환사채 등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

● 실전 상담 사례 ●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상증법 제40조)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②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입니다. 다만,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식은 양도일의 증가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③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증세를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과세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이상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증자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7항).

[증여재산가액]

거래유형	특수관계인간 거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
저기양수	수증자 = 양수인 = 시가 - 양수대가 - Min(시가×30%, 3억원)	= 시가 - 양수대가 - 3억원
	수증자 = 양도인 = 양도대가 - 시가 - Min(시가×30%, 3억원)	= 양도대가 - 시가 - 3억원

동 질의에서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상장주식을 상증법상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이지만, 양도방법이 시간외대량매매이며 양도가액은 그 날의 한국거래소 증가입니다. 따라서, 거래된 상장주식은 상증법상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②)에 해당하므로 A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토막 상식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한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개발부담금제도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